

KISO

2017 Vol.27

Journal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주식회사 000의 연관 검색어 삭제 요청의
심의결정 리뷰 / 조정욱

기획동향

2017년 '인터넷 이용 환경에 대한
이용자 인식조사' 결과 / 나현수

법제동향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입법 동향 / 정준화

박근혜 정부가 남긴 ICT정책과 앞으로의
과제 / 한세희

국내외 주요소식

중국 미성년자 게임 섯다운제 도입
의미와 전망 / 안정아

이용자 섹션

인터넷 포털의 투명성과 이용자 신뢰
- 가짜 뉴스를 중심으로 / 강장묵

해외 자율규제 기구 소개

영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협회(ISPA UK)
/ 박옥범

편집위원 칼럼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 양현서

문화시평<도서>

미래의 정체, 정말 보여준다 / 김연지

KISO NEWS

포털의 검색어 정책 방향성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KISO, 인터넷 개인 방송인을 위한
안내자료 제작



주식회사 000의 연관 검색어 삭제 요청의 심의결정 리뷰

조정욱 / 법무법인 강호(대표변호사)

<Keyword>

인터넷, 연관검색어, 부정경쟁행위, 캐릭터, 저작권

1. 대상 심의결정의 주요 내용

가. 조정조사의 주요 내용

본건 신청인(원고, 피해사. 이하 ‘신청인’)은 심의결정이 있기 전에 경쟁사(피고, 침해사. 이하 ‘경쟁사’)를 상대로 경쟁사가 제품화한 캐릭터가 신청인의 캐릭터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를 하였고 항소심 진행 중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부정경쟁행위 금지(캐릭터 유사 제품 판매금지 및 재고 폐기, 유사 캐릭터 포함된 게시물 삭제 포함), 경고 문구 게시, “육심원, youkshimwon, 운명처럼 널 사랑해, 장나라 등”의 표지 사용 금지 및 협조, 판매자 명단 제공, 중국 온라인 지적재산권 신고, 위약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본건 심의결정의 주요 내용

신청인은 위 조정조서를 근거로 신청인의 상호 검색 시 본건 심의대상 연관검색어 ‘○○’ (이하 ‘본건 연관검색어’)가 표출되는 것 자체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자사 상호 및 상표 이미지에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중 제6호(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제8호(법원이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또는 행정기관이 법령 및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등에 의하여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용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유사한 표지를 검색하고 다양한 제품을 비교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므로, 신청인의 표지 검색 시 연

관검색어로 경쟁사의 표지가 생성된 것은 이용자의 검색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해당 검색어를 통해 우선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 및 법원의 조정을 위반하거나 이를 방조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조정조서의 내용은 상호의 유사성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캐릭터의 유사성이 문제되고 있으며, 신청인의 상호와 경쟁사의 상호는 그 자체만으로 용어의 유사성 및 오인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 진다. 또한 검색결과를 보더라도 신청인의 상호에 대한 검색결과에서 경쟁사의 상호에 관한 내용이 검색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색 결과 역시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중략) 해당 조정조서는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성립의 결과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므로, 해당 조정조서의 내용 혹은 해석상 해당 검색어가 삭제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우선 조정조서에서는 검색어의 삭제의무 혹은 검색어 삭제와 관련하여 협조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명시적으로 검색어 삭제는 조정조서에 포함된 사항이 아님이 명백하다. 다음으로 해석상 경쟁사인 ‘○○’는 부정경쟁의 해소의무가 부여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바탕으로 해당 검색어가 삭제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살피건대, 조정조서의 내용이 상호의 유사성이 아닌 캐릭터의 유사성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본 건 검색어인 해당 상호로 인한 신청인의 상호와의 혼동이나 오인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유사

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경쟁사의 상호 검색 시 다른 경쟁사의 상호가 검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조정조서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상호를 배제하는 것은 이용자의 정당한 알 권리를 제한하고, 경쟁사에 대한 과도한 권리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다만 이에 대하여 소수 의견으로, 경쟁사의 상호가 동시에 검색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본 건 심의는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연관검색어 생성행위 여부보다 연관검색어 자체의 권리침해 여부가 중요한 경우이므로 해당 검색어로 인해 신청인의 권리침해가 인정된다는 점, 조정조서의 내용으로 비추어보아 신청인의 상호 검색 시 경쟁사 상호인 ‘○○’가 동시 현출되는 경우 이용자의 해당 사이트에 대한 방문 및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청인의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이용자의 알권리보다 피해회복을 위한 검색어 삭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삭제의견이 있었음을 부기해 둔다.

2. 심의결정에 대한 검토

가. 연관검색어의 의의 및 목적

정책규정 제2조 제2호는 “연관검색 및 자동완성검색 서비스”란 ‘이용자들의 검색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인터넷상 관련 이슈를 손쉽게

게 알 수 있게 해주기 위해 다수 이용자들의 검색활동자료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입력하는 검색어와 관련성이 높은 검색어를 제시해주는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제3호는 "연관검색어"란 '회원이사가 이용자의 검색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용자들이 입력한 검색어 데이터베이스를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특정 검색어를 입력한 이용에 바로 이어 입력될 확률이 높은 검색어를 화면에 자동으로 제시하는 기능에 의하여 제시되는 검색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연관검색어 서비스의 활용을 통해 이용자들은 특정 키워드 검색 시 자신이 알아보려는 바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같은 키워드를 검색한 타인들의 관심사를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보다 다각적인 차원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졌고, 이를 '알권리'나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간섭하지 않으려는 입장에서 정책규정 제12조는 "회원은사 연관검색어 등을 인위적으로 생성 또는 변경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제3자의 권리 침해 또는 방해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예컨대, 제8조, 제13조 등). 이 사건은 그 예외조항 중 제6호(저작권침해)와 제8호(법원의 판결 등)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연관검색어 등 또는 검색결과가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건 심의결정은 '조정조서의 내용은 해당

캐릭터의 유사성이 문제된 것이기 때문에 상호의 유사성 문제가 아니고 신청인의 상호와 경쟁사의 상호는 유사하지도 않다는 점, 검색결과를 보더라도 신청인의 상호에 대한 검색결과에서 경쟁사의 상호에 관한 내용은 검색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검색결과도 신청인의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연관검색어를 인위적으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정책결정 제12조의 원칙에 충실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저작물의 제호(題號) 자체는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독립된 사상,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¹⁾ 사실 '제호'나 '상호'로 된 검색어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본건 심의결정 전에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본건 심의결정의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나 만약 경쟁사가 조정조서에 따른 이행을 완료하였다면 연관검색어의 검색결과에서도 캐릭터의 유사성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저작권을 직접 침해할 가능성은 명백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경쟁사가 조정조서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고 있거나 그 이행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다면 경쟁사의 사이트나 게시물, 제품 등에 저작권침해상태가 남아 있을 수 있고 그 연관검색어나 검색결과가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1) 서울고등법원 1991. 9. 5.자 91라79 결정(확정).

다. 법원의 판결·결정, 행정처분 등에 의하여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석상 경쟁사는 부정경쟁의 해소의무가 부여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본건 연관검색어가 삭제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할 때,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건 연관검색어가 삭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 조정조서의 내용이 상호의 유사성이 아닌 캐릭터의 유사성을 근거로 하고 있다.
- 본 건 검색어인 해당 상호로 인한 신청인의 상호와의 혼동이나 오인가능성이 낮으므로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
- 경쟁사의 상호 검색 시 다른 경쟁사의 상호가 검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조정조서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상호를 배제하는 것은 이용자의 정당한 알 권리를 제한하고, 경쟁사에 대한 과도한 권리침해의 우려가 있다.

본건 심의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특히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것인지, 그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본건 연관검색어를 삭제해야 할 정도의 필요성이 생긴 것인지 등의 제반 사정까지 종합하여 고려한다면 보다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① 삭제 대상은 “검색어”가 아니라 “연관검색어”이다. 즉 신청취지는 경쟁사의 상호를 회원사의 검색어 데이터베이스에

서 영원히 삭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상호를 입력할 때 바로 이어 입력될 확률이 높은 검색어로 경쟁사의 상호가 화면에 자동으로 제시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 ② 연관검색어는 이용자들의 검색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제 3자의 편의성보다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더 보호해야 하거나 건전한 사회질서를 더 유지해야 할 경우에는 연관검색어의 생성이나 변경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 ③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호할 필요는 있으나, 그 알고자 하는 이유가 “저작권침해물”을 구매하기 위해서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이유가 있는지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알고자 하는 이유가 ‘불법’과 관련이 있고 그 알고자 하는 정보 역시 ‘불법’과 관련이 있다면 알권리의 보호 필요성은 재고의 여지가 있게 된다.
- ④ 알권리의 제한 사례 중에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보호, 명예훼손 등이 종종 있는 것도 참고가 될 수 있다.
- ⑤ 본건 심의결정은 ‘경쟁사에 대한 과도한 권리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여기서 “침해될 권리”는 무엇인지도 검토해야 한다. 즉 부정경쟁행위를 한 경쟁사가 자신의 상호와 신청인의 상호가 함께 연관검색어로 반드시 검색되어야 하는 권리나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도 고려해보아야 한다(‘캐릭터의 유사성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면 신청인의 상호와 경쟁사의 상호가 굳이 연관검색어로 묶여질 필요가 있을까?’ 등). 앞에

서도 언급하였지만 신청인이 경쟁사의 상호를 회원사의 검색어 데이터베이스에서 영구히 삭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연관검색어에서 제외해달라고 한 것은 신청인이 저작권침해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경쟁사와의 오인·혼동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 ⑥ 일반적으로, 저작권침해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해서 그 침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조정이 성립되어도 피고가 저작권침해 등 권리침해를 하였다는 사실을 조서에 기재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피고가 저작권침해 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정에 동의하는 경우 등)도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경쟁사는 권리침해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권리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보다 그 권리보호가 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수의견이 ‘조정조서의 내용으로 비추어보아 신청인의 상호 검색 시 경쟁사 상호가 동시 현출되는 경우 이용자의 해당 사이트에 대한 방문 및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청인의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상황 이므로 이용자의 알권리보다 피해회복을 위한 검색어 삭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삭제의 견을 낸 것은 일응 납득할 만한 하다.

다만, 경쟁사가 조정조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 저작권침해가능성이 별로 없는 경우라면 소수의견의 근거는 약해질 수 있다. 예컨대, 본건 조정조서에는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이용자들이 신청인과 경쟁사의 제품간 혼동 내지 오인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다. 본건 심의에서 조정조서의 이행 여부까지 검토가 되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3. 결론

정리하자면 본건 심의결정(다수 의견)의 타당 여부는 향후 저작권침해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소수의견이 “특별한 사정”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것은 경청할 만하다. 특히 연관검색어의 편의성, 알권리, 표현의 자유는 보다 실질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KISO JOURNAL

「2017 인터넷 이용 환경에 대한 이용자 인식조사」 결과

나현수 /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팀장

<Keyword>

이용자인식조사, 설문조사, 인터넷 환경 관련

1. 들어가며

지난 몇 년간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였다. PC를 사용한 인터넷 이용은 감소하고 이제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인터넷 사용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¹⁾, 기존의 게시판 서비스와는 다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등장하고,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인스턴트 메시저는 이미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지 오래이다. 즉, 기존에 포털, PC 기반의 인터넷에서 앱, 모바일 기반 인터넷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터넷에 대한 조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인터넷 이용율 등에 대한 양적 지표와는 달리, 인터넷 공간이 자유롭고 신뢰할만한 공간인지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등 질적 지표는 주기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용자의 인식 등에 대한 질적 지표는 인터넷 규제에 방향성을

정할 때 증거에 기반한 정책(Evidence based policy)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장점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마크로빌엠브레인에 의뢰하여 한국의 인터넷 이용자가 인터넷 환경의 표현, 규제와 같은 이슈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는 2017년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성인 인터넷 이용자 1,170 명을 나이 성별에 따라 추출한 표본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2. 인터넷 공간과 표현의 자유 인식

우선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한국은 2006년부터 5년간 ‘인터넷제한 적본인확인제’라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다만, PC

1) 한국인터넷진흥원(2016), 2016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35

기반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전반적으로 서비스 환경이 변화하면서, ‘개인화 된 서비스’가 익숙한 현 시점에서 이용자들의 위축효과는 적게 나타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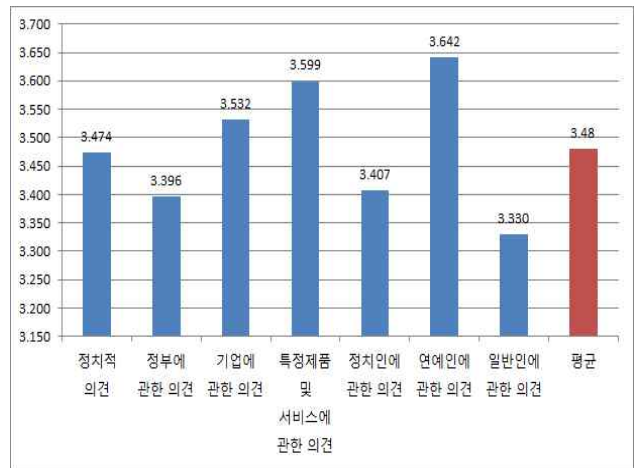
본 조사에서는 의견의 분류를 나누어 정치적 의견, 정부에 관한 의견, 기업에 관한 의견, 특정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의견, 연예인에 관한 의견, 특정 일반인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설문하였다.

‘매우 자유롭지 않은 공간이다’를 1점, ‘매우 자유로운 공간이다’를 5점으로 두었을 때, 전체 평균은 3.48 점으로 나타나 비교적 한국의 인터넷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표현의 자유가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부적으로 볼 때에는 연예인에 대한 의견 및 특정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높게 나타나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보장되어야 할 정부에 관한 의견(3.40) 정치인에 관한 의견(3.407)은 일반인에 관한 의견(3.33)에 이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게시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응답함으로써, 특히 공적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은 일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인터넷 공간의 게시글에 관한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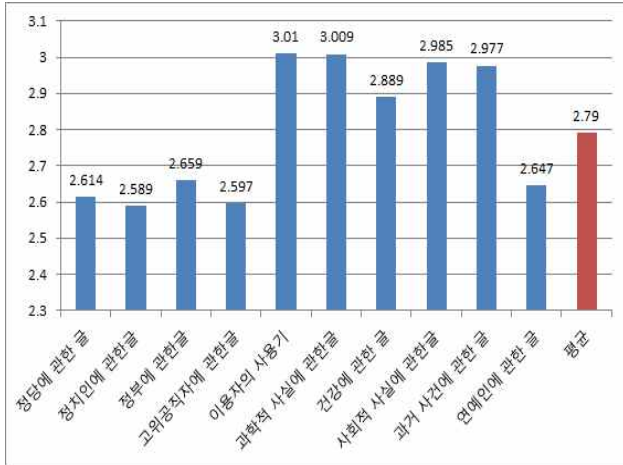
다음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이 인터넷 상의 다양한 게시글에 대해 얼마나 해당 게시글이 사실이라고 믿고 신뢰하는지를 각 영역별로 설문하였다. 다만 인터넷 상의 모든 정보를 그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작성한 글로

국한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를 1점, ‘전적으로 신뢰한다’를 5점으로 두었을 때 인터넷 상 게시글의 신뢰도는 평균 2.79로 중간 값인 3보다 낮게 나타나 인터넷 상의 이용자 작성 게시글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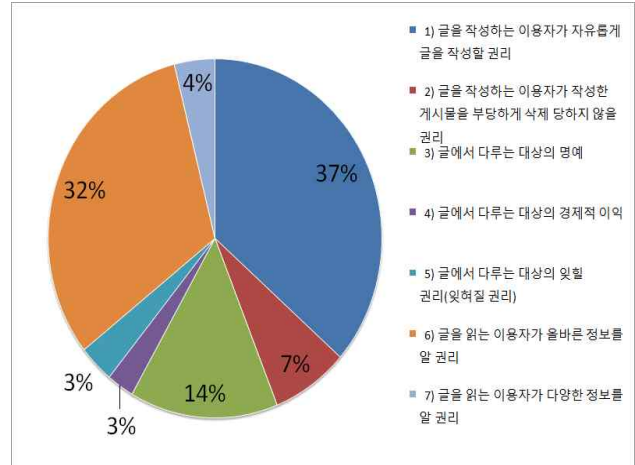


<그림 1>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인식

다만 그 중에서도 이용자가 직접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작성한 사용기(3.01), 과학적 사실에 대해 설명하는 글 (3.009), 사회적 사실에 관한 글 (2.985) 등 비교적 객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자 작성 게시글이라고 하더라도 비교적 신뢰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정치인에 관한 글(2.589), 고위공직자에 관한 글(2.597), 정당에 관한 글 (2.614), 등 주관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시글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용자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어느 정도는 향상된 근거로 보인다.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고, 사실적인 게시글에 대해서는 신뢰를 높게 하지만, 의견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게시글을 살펴본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2> 인터넷 상 게시글에 관한 신뢰도



<그림 3>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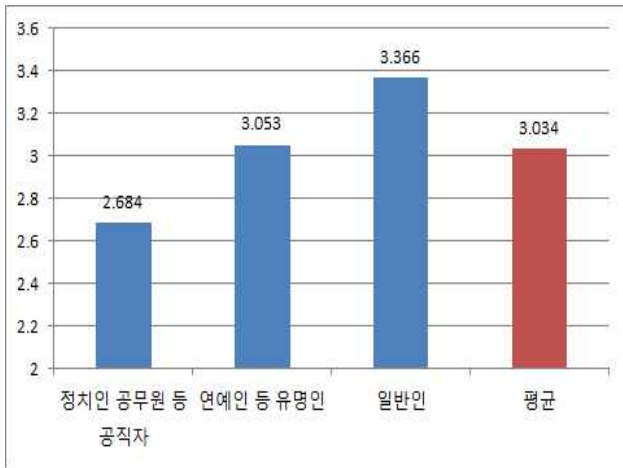
4. 인터넷 공간의 권리에 관한 인식

인터넷 공간은 오프라인 공간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자의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 중 어떠한 권리가 우선시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설문하였다. 사전 조사를 통해 다양한 권리 중 이용자의 응답이 있었던 권리를 중심으로, ‘글을 자유롭게 작성할 권리’, ‘글을 부당하게 삭제당하지 않을 권리’, ‘글에서 다루는 대상의 명예’, ‘글에서 다루는 대상의 경제적 이익’, ‘글에서 다루는 대상의 잊힐 권리’, ‘글을 읽는 이용자가 올바른 정보를 알 권리’, ‘글을 읽는 이용자가 다양한 정보를 알 권리’로 나누어 설문하였다. 그 결과 자유롭게 글을 작성할 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3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글을 읽는 이용자가 올바른 정보를 알 권리(32%), 글에서 다루는 대상의 명예(14%) 순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잊힐 권리(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각 집단별로 어느 정도 보장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설문하였다. 잊힐 권리는 네트워크상에 작성된 정보는 그 서비스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영원히 기록되는 속성을 고려하여, 자신의 정보를 네트워크 상에서 삭제하는 등 관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만, 이러한 권리를 무분별하게 인정할 경우, 인터넷 이용자의 알 권리를 해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본 조사에서는 정치인 공무원 등 공직자, 연예인 등의 유명인, 일반인으로 그룹화하여, 각각 잊힐 권리와 알 권리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 설문하였다. (1 : 알 권리가 매우 더 중요하다, 5 : 잊힐 권리가 매우 더 중요하다)

그 결과 이용자 들은 정치인 공무원 등은 잊힐 권리 보다 알 권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반면, 일반인의 경우에는 잊힐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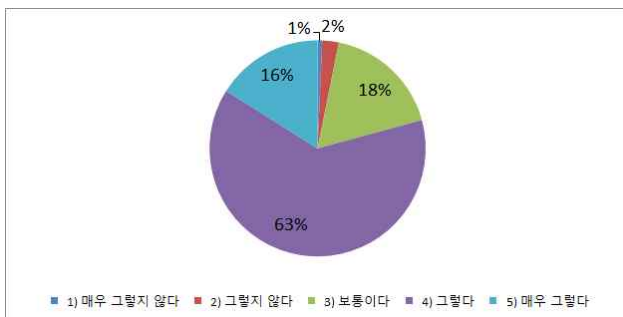


<그림 4> 대상별 잊힐 권리와 알 권리의 비교

5. 새로운 IT 기술에 관한 인식

모바일 환경으로 빠르게 진화한 IT 환경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O2O서비스,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스템 등은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과는 다른 산업체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IT 기술이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용자의 대다수는 새로운 IT 기반 신산업이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16%, 필요하다는 의견이 63%로 압도적으로 새로운 산업이 한국의 경제발



<그림 5> IT 기반 신산업이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가?

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신산업이 한국의 경제 발전이라는 측면이 아닌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될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의견이었다. 추가로 AI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냐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가 14%, 그렇다가 51%로 전체의 65%를 차지하였다.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이용자는 전체의 8%에 불과했다.



<그림 6> AI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6. 결론

한국의 인터넷 이용자는 한국의 인터넷이 비교적 표현의 자유가 잘 지켜지는 공간이며, 또한 이용자가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권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데에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측면에서도,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여 의견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고, 사실의 측면에 가까운 게시물에 대해서는 더 신뢰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등, 인터넷 문화가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해 간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은 비교적 빠른 시간에 정보화가 진행되

면서, 그 부작용 역시 겪었으며 이를 극복하여 현재의 문화를 만들어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용자도 인터넷의 중요성 인식, 인터넷 공간에 대한 이해도 등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인간의 일자리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KISO JOURNAL



박근혜 정부가 남긴 ICT 정책과 앞으로의 과제

한세희 / 동아사이언스 데일리뉴스팀 기자

<Keyword>

박근혜, 규제, 전자상거래, 간편결제, 스타트업, 창조경제

1. 들어가며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으로 박근혜 정부가 임기를 1년가량 남겨두고 좌초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ICT 정책들 역시 미완의 상태에 머물게 되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대표 정책이었던 ‘창조경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박근혜 정부 시기 ICT 정책의 핵심은 ‘창조경제’를 위한 규제 완화와 스타트업 지원이라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갈라파고스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던 우리나라의 ICT 제도와 글로벌 단일 시장으로 통합된 ICT 산업 환경과의 충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놓고 소비자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란이 일어났다. 전자상거래에서의 공인인증서 논란과 우버 등 교통 O2O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2. 규제 완화에 나서다

가. 전자상거래 간편 결제를 추진하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범정부 차원의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을 구성, 인터넷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규제에 대한 개선 작업에 나선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개선 과제로 꼽힌 것이 전자상거래의 불편을 초래하는 공인인증서 관련 내용이었다.

30만원이상 전자상거래를 할 때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한 규제는 국내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 최대의 불만 사항으로 꼽혀왔다. 공인인증서는 대부분 인터넷 익스플로어 브라우저에서 액티브X 플러그인 형태로만 사용되면서 더욱 불편을 더하는 상황이었다.

2014년 3월 청와대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공인인증서 때문에 중국인들이 한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 나오는 ‘천송이 코트’를 온라인 구매할 수 없다고 한다”며 공인인증서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에 나섰다.

2014년 7월 30만원이상 전자상거래에 대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가 폐지되었다. 공인인증서 외에 다른 보안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되고, 카드 정보를 미리 저장해 두고 ID와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HTML5 기술을 사용, 인터넷 브라우저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 작업을 처리하게 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금융 거래에서 일상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이를 위해 번거로운 소프트웨어 설치와 인증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필요한 보안기능 설치를 위해 액티브X 플러그인이 아닌 exe 실행 파일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금융기관과 전자상거래 기업에 깊이 뿌리박은 공인인증서의 유산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 등 눈에 보이는 부분에만 주목하다 소비자들이 실제로 불편없이 온라인 금융 거래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개발 및 사용자 경험 설계에는 소홀한 것 아니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내 간편결제 시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이 제공하는 대동소이한 서비스 3·4종이 결합하고 있으며, 압도적 시장의 선택을 받은 서비스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편 금융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17년 4월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가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산업자본의 지분 비중을 높이는 은행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 앞에 놓인 장애물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나. 게임 자율심의에 나서다

박근혜 정부 때에는 게임 과몰입 예방을 명분으로 밤 10시 이후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셋다운’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고 자율 심의 체제로의 전환이 주로 논의되었다. 스마트폰의 본격 보급과 함께 게임 산업의 중심이 모바일 게임으로 빠르게 이동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강제 셋다운제를 규정한 청소년보호법과 부모들의 시간 선택권을 제시한 게임산업진흥법의 조정 문제, 모바일게임의 셋다운 유예 연장 여부 등이 논의되고 있다.

게임 심의는 민간 자율 규제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화해 왔다. 초기에는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가 국내 심의를 받지 않는 게임을 공급한다는 이유로 이들 앱 장터의 게임 카테고리 자체가 국내에서 차단되기도 했다. 하지만 글로벌 단위로 유통과 판매가 이뤄지는 모바일 시장의 성격에 맞지 않고 국내 사용자의 불편만 커지는 문제로 인해 결국 민간 자율심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되어 갔다.

모바일게임은 구글, 애플 등 오픈마켓 사업자가 검수해 유통할 수 있게 하고, 청소년이용가 온라인게임과 PC 및 콘솔 게임 역시 민간 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심의하게 했다. 2016년 5월에는 성인용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에 자율심을 허용했다. 게임 개발사나 퍼블리셔가 자율심의 사업자로 지정되어 애플이나 구글처럼 자체적으로 심의해 출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3. 스타트업 지원이 창조경제의 핵심

박근혜 정부의 대표 정책인 ‘창조경제’에 맞춰 스타트업과 창업에 대한 지원은 확대, 정비되었다. 국내 주요 대기업과 손잡고 지역 특성 및 거점 산업과 매칭해 창업을 지원하

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17개 지역에 18곳 설립했다. 이들 센터는 각 지역에 창업을 위한 공간과 각종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창업 확산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리란 기대를 받았다. 반면 자생적 기반 없이 정부가 대기업의 팔을 비틀어 인위적인 조직을 만들었을 뿐 실제 성과는 미미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또한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를 확대하고 기술 중심 스타트업에 대해 투자사의 투자금액만큼 정부가 매칭 펀드를 제공하는 TIPS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4. O2O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사용자의 필요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 주는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온디맨드 서비스, 혹은 O2O 서비스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uber)는 미국을 중심으로 택시 등 대중교통 시스템을 뿌리부터 흔들며 O2O 서비스의 대표 주자로 떠올랐다.

이와 같은 O2O 서비스는 국내에서도 시도되었으나 기존 오프라인 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좌초하거나 본래 계획과는 다른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우버는 2013년 한국 진출을 선언했으나 서울시의 강경 대응 방침과 택시 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시는 우버를 불법 서비스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에 나섰고, 국토교통부도 우버에 대한 단속을 요청했다. 그러는 사이 카카오는 택시조합과 제휴, 인근 택시를 호출하는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2015년 선보였다. 카카오택시는 택시를 보다 편리하게 부를 수 있게 했으나 기

사들이 목적지를 보고 손님을 선택하는 승차 거부가 일어나는 등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한편 승객의 목적지에 따라 노선을 조정하는 ‘버스의 우버’를 표방하는 스타트업 콜버스도 초기부터 택시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정부 역시 불법 규정을 검토하는 등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기존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맞춰 스타트업의 신규 진출을 저해하는 정부 행태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콜버스와 택시 회사가 합작해 사업을 하게 하는 타협안을 내놓았다.

5. 나가며... 차기 정부 ICT 정책의 과제는

박근혜 정부의 ICT 정책은 최근 수년 간 점점 더 강하게 비판의 대상이 되어온 한국적 갈라파고스 규제 완화와 아울러 스타트업 창업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스마트폰의 폭발적 확산에 따른 모바일 혁명으로 세계 IT 및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하나의 글로벌 시장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창업 열풍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낸 실리콘밸리 생태계를 복제하려 했다.

하지만 기존 사업자나 규제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효율적 조율에 실패해 소비자 입장에서 눈에 띄는 편리함이나 가치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 자체가 개념이 모호하고 불명확한 가운데, 정부의 인위적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창조적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 한 시도가 무리 아니었냐는 평가다.

그러나 규제 완화와 스타트업 창업지원 등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을 시도한 것은 현재 국내외 경제 상황과 기술의 변화 등을 볼 때 적절한 방향이었다 할 수 있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 역시 4차산업혁명, 창업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 비슷한 키워드를 산업 및 경제 공약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모바일에 이어 인공지능이 다시 한번 사회 전반을 뒤흔들 ICT 핵심 기술로 떠오르는 가운데, 인공지능 분야에서 스마트폰 도입 초기 모바일 혁명에 잠시 뒤쳐졌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노력도 활발하다. 박근혜 정부의 ICT 정책이 직면할 수 밖에 없던 근본적 문제, 즉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공학, 지식 기반 콘텐츠의 역량이 아직

미비한 가운데 점점 글로벌 시장의 최종 승자로 떠오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거대 ICT 기업들과 어떻게 경쟁 혹은 협력할 것인가의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다.

글로벌 시장 수준의 편의와 가치를 누리기 원하는 국민들의 수요와 국내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충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도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단순한 보여주기식 정책이나 외국의 경험을 복제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이다. 우리의 경쟁력을 살린 제품과 서비스,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게 돕는 실질적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의 역할은 무엇인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KISO JOURNAL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입법 동향

정준화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Keyword>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지능정보사회, 디지털기반 산업

1. 들어가며

세계적으로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과 같은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한 요구가 높다. 과거에는 효율성·전문성 제고와 같은 일하는 방식의 개선으로 대응했지만 최근에는 사물인터넷·클라우드컴퓨팅·빅데이터·인공지능과 같은 와해성 기술(disruptive technology)을 핵심으로 하는 지능정보화 혹은 디지털기반 산업화로 대응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비서, 스마트공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변화들은 2016년 1월에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Master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를 주제로 개최된 제46회 세계경제포럼 이후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으로 빠르게 확산중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 자체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예견하는 변화가 머지않아 보편적으로 확산되고 우리의 삶을 유의미하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부 선도적인 개인이나 기업의 노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고, 국가 차원의 정책적·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UBS(2016)의 4차 산업혁명 준비수준 평가에서 세계 25위라는 기대 이하의 결과를 차지한 한국은 더욱 정확한 방향과 전략적인 수단으로 미래의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2. 주요 국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미국은 민간 중심의 협력을 강조한다. 지난 오바마 정부는 선진 제조기술을 이용한 제조업의 활성화와 혁신을 목표로 하는 ‘첨단제조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정부와 민간이 연계한 ‘제조혁신국가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인터넷 기업들이 주축이 되어 적극적으로 정보통신기술과 제조업의 결합을 추진했다. 기존의 인터넷은 정보·교육·엔터테인먼트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컴퓨팅 등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이 제조업과 결합하는 산업인터넷(Industrial Internet) 사례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미국 5개 민간기업(GE, AT&T, Cisco, IBM, Intel)이 중심이 되어 2014년에 산업인터넷 컨소시엄(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IIC)을 설립했으며,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 30

개 국가 250개 기관이 참여중이다.

독일은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조한다. 독일은 전통적인 제조 강국이지만 저비용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추격하고 있는 중국·인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첨단기술전략(High Tec Strategy 2020)’의 액션플랜 중 하나로 제조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시킨 사이버물리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 CPS), 즉 스마트공장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 전략을 추진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준화 지연, 중소기업 참여 부재, 인력 부족 등의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인·전문가·노동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적 워킹그룹을 형성하여 정책을 수립·결정·추진하는 ‘플랫폼 인더스트리 4.0(Platform Industry 4.0)’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국가전략인 ‘중국제조 2025’를 추진 중이다. 이 전략은 중국의 향후 30년간(2015-2045)의 발전방향을 10년씩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마다 제조강국이 되기 위한 혁신역량, 품질제고, 정보통신기술과 제조업 융합, 녹색성장의 4개 공통과제를 제시한다. 그리고 공통과제 추진을 위해 정부간섭 축소, 시장역할 확대, 균형적 대외개방 등의 방침을 제시했다. 이 중 1단계(2015-2025) 목표는 글로벌 제조강국 대열에 진입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10대 중점 육성 산업(신세대 정보기술, 최첨단 디지털 제어장치와 로봇, 해양 엔지니어링 설비, 신소재, 항공 등)을 설정하고, 5대 중점 프로젝트(제조업 혁신센터 설립, 스마트 제조공정, 공업기반 강화 공정, 녹색제조 공정, 고급장비 혁신 공정)를 제시했다.

3. 한국의 정책 및 입법 동향

가. 주요 정책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으로 2015년 3월 ‘미래성장동력-산업엔진 종합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능형 로봇, 착용형 스마트기기, 실감콘텐츠, 가상현실시스템, 스마트자동차, 5G 이동통신, 수직이착륙무인기 등 ‘19대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2020년까지 약 5.6조원을 투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 6월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발표했다. IT·SW 융합신산업을 창출하고 선도형 산업 전략을 추진하여 한국 제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8대 스마트 제조기술(빅데이터·클라우드·홀로그램·CPS·에너지절감·스마트센서·IoT·3D 프린팅) 육성, 제조업 소프트웨어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가칭)제조혁신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 12월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데이터 자원의 가치 창출, 지능정보기술 기반 확보, 국가 근간서비스에 지능정보기술 선제적 활용, 지능형 의료서비스 확산,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 지능정보 윤리 정립 등 지능정보사회 기반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가칭)지능정보화기본법을 마련하고 범국가적 추진 체계인 (가칭)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법정부 정책 조정체계인 청와대와 국무총리실도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부처간 정책조정을 추진 중이다. 청와대는 2016년 8월 ‘제2

차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성장동력 분야의 5대 과제로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자율주행차, 경량소재, 스마트 시티를 선정하고,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분야의 4대 과제로 정밀의료, 바이오 신약, 탄소 자원화, (초)미세먼지를 선정했다. 국무총리실(대통령 권한대행)은 2017년 2월 ‘신산업 규제 혁신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를 통해 인공지능·가상현실·핀테크 등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규제혁신 대책을 논의했다.

나. 입법 동향

4차 산업혁명 관련 입법의 상당부분은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의원 대표발의, 2016. 12. 16)은 기존의 ‘지식정보사회’를 ‘지능정보사회’로 재정의하고, 지능정보사회 관련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강효상의원 대표발의, 2017. 2. 22)은 상대적으로 인공지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공지능기술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능정보사회 진흥 및 윤리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 측면을 강조한 법안으로는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정세균의원 대표발의, 2017. 3. 7)이 있다. 이 법안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디지털기반 산업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내 산업의 디지털기반 산업화를 촉진함과 동시

에 기존 일자리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강조한다.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최연혜의원 대표발의, 2017. 3. 30)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제4차 산업혁명 지원센터’와 같은 진흥 기반 마련을 강조한다.

이 외에 4차 산업혁명을 위해 개별 법률 조항을 네거티브 규제(negative regulation) 방식으로 개정하는 경우도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구간에 관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1항 제3호가 기존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운행구역에서만 운행할 것”에서 최근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에서는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여 운행하지 아니할 것”으로 개정되어 실제 전국의 모든 도로에서 임시운행이 가능해진 것이 대표적이다. 드론을 이용한 사업의 경우에도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키거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업무를 제외하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다. 향후 정책 및 입법 과제

한국이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 자체를 보다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많은 기관들은 4차 산업혁명을 기술의 개선이나 융합 정도의 수준으로 파악하여 통상적인 조치들로 대응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표현을 ‘인더스트리

4.0'이나 '4차 산업' 등과도 구분 없이 사용하기도 한다. 그 결과 4차 산업혁명을 더욱 모호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지극히 사소하고 일시적인 유행으로 전락시킬 우려도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이 고도의 전문성과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 표현의 사용에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 나아가 세계경제포럼이 제안한 '4차 산업혁명' 표현을 원형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한국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도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책적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료들의 기술적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 현재 정부 관료는 적법성·효율성·투명성 등을 갖춘 일반행정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전문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와해성 기술이 주도하는 사회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유도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부에 기술에 대한 이해와 이것을 제도화하고 집행하는 전문성까지 동시에 갖춘 인재, 즉 기술관료(technocrat)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다수의 정책이 추진되었고, 이는 앞으로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는 이른바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방안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경험적으로 컨트롤 타워는 설치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의도된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는 보장도 어렵다. 대신 다양한 주체들이 자신의 사업을 추진하되 동시에 외부의 구성원들도 모두 상대방의 사업 내용을 알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에 참여하거나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범국가적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구축이 타당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투명하게 공유되고, 실질적인 합의 도출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이해관계의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파레토 효율적(Pareto efficient) 개선을 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의료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인터넷전문은행의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한도를 4%로 규제하고 있는 「은행법」 등과 같은 오래된 문제들을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에 대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의 많은 기술들이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현재는 4차 산업혁명 진흥이 우선시되어 있고 일자리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보류되어 있다. 그러나 일자리 문제는 제조혁신 및 생산 활성화보다 먼저 직면하게 될 실질적인 문제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17년 1월 조사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직업종사자의 업무수행능력 중 12.5%는 인공지능·로봇으로 대체 가능하며, 이 비율이 2025년에 70.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이 기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예측·평가하여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민관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다.

이 외에도 교육제도 개선, 인공지능 윤리, 로봇과세, 기본소득 등 수많은 이슈들이 있다. 이러한 이슈들은 각각 고유한 제도와 연결되어 있는데, 해당 제도는 대부분 효율성·전문성을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2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권위, 경험, 지식, 전문성, 직관 등을 강조

할 경우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근본적인 대안 모색은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대신 특정 세력이 논의를 독점하지 않는 조화와 균형,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는 개방적 환경이 중요할 것이다. KISO JOURNAL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2016), 『지능정보화 중장기 종합대책』.

중소기업중앙회(2017), 『보도자료 : 중소기업 중항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중소기업인식 및 대응조사」 결과』, 2016.12.5.

한국고용정보원(2017), 『보도자료 : 2025년 직업종사자 61.3% 인공지능·로봇으로 대체 위험 높아』, 2017.1.3.

Schwab Klaus(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orld Economic Forum.

UBS(2016), 『Extreme automation and connectivity: The global, regional, and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UBS White Paper for the World Economic Forum Annual Meeting 2016.

중국 미성년자 게임 섯다운제 도입 의미와 전망

안정아 / 중국 허베이대학교 외국어학과 외국인교수

<Keyword>

게임 섯다운제, 미성년자, 중국, 한국, 청소년 보호

1. 중국 게임 섯다운제 도입

가. 도입 배경

중국인터넷네트워크정보센터(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의 2016년 보고서¹⁾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게임 이용자수는 4.17억 명으로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57%에 달하며 이중 19세 이하 청소년 인터넷 이용자는 1.7억 명(23.4%)이다. 미성년자의 최초 인터넷 접속연령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는 점²⁾과 미성년자의 인터넷 사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미성년자의 90.1%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범죄의 70%가 인터넷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³⁾에서 인터넷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기능에 학계 및 관련 기관들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인터넷, 특히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하에서 중국이 미성년자의 심야 게임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조례(未成年人网络保护条例)’를 심의 중이다. 미성년자는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인터넷 게임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위해 PC방, 공공기관의 PC에는 청소년의 본인 인증을 확인하는 소프트웨어 설치는 물론, 법이 발효된 이후 출고되는 PC와 스마트폰에도 설치해야 하며 중국 게임업체들은 이용자들의 실제 정보를 바탕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나. 주요 내용

중국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이 기초한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조례’ 심의안은 미성년자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

1) 중국인터넷네트워크정보센터(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2017), ‘제39차 중국 인터넷 발전현황 통계보고’. available: <http://cnnic.cn/hlwfzyj/hlwzxbg/hlwtjbg/201701/P020170123364672657408.pdf>
2) 중국청소년범죄예방연구회(中国预防青少年犯罪研究会)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인터넷 최초 접속연령은 10-15세가 46.8%, 최저 연령 3세 이하가 1.1%에 달한다.
3) available: <http://baike.baidu.com/item/%E6%9C%AA%E6%88%90%E5%B9%B4%E4%BA%BA%E7%BD%91%E7%BB%9C%E4%BF%9D%E6%8A%A4%E6%9D%A1%E4%BE%8B>.

할 수 있도록 인터넷게임 사용시간, 보호장치 설치, 콘텐츠 규범을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미성년자의 인터넷 게임이 완전히 금지된다(제23조). 학교, 도서관 등 공공기관은 PC에 미성년자의 인터넷 접속보호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1조) 스마트폰 등 모바일 단말기 출고시 또는 판매전에 관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설치 안내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2조). 조례안은 이와 함께 인터넷상에서 미성년자에게 폭력, 괴롭힘, 자살, 자해, 성접촉, 가출, 구걸 등의 불건전한 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를 보여주기 전에 경고 또는 안내 정보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제8조). 미성년자의 보호자, 학교 등이 사이버폭력 행위를 발견하면 구조 의무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제21조) 인터넷게임 규제를 위반하는 온라인 게임업체는 문화경영허가증을 취소하는 강력한 조치까지도 명시하고 있다(제33조).⁴⁾

2. 국내 인터넷게임 섯다운제 규제 내용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불리며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게임 섯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돼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소관부처는 여성가족부이다. 섯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인터넷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이 시간대에 연령과 본인 인증을 통해 청소년 게임이용을 강제로 차단해야 한다. 이 제도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PC 온라인게임과 CD를 통해 접속하는 PC 패키지게임에 우선 적용되고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게임은 모두 섯다운제의 적용을 받으며 개인정보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추가 이용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추가 이용료가

<표> 한-중 미성년자 게임 섯다운제 비교

구분	한국(강제 섯다운제)	중국
근거 법령	청소년 보호법(제26조)	중화인민공화국미성년자보호법 (미성년자인터넷보호조례 제23조)
소관 부처	여성가족부	국가인터넷정보관공실
규제 내용	오전 0시 - 오전 6시 인터넷 게임제공 차단	오전 0시 - 오전 8시 인터넷 게임제공 차단
규제 방식	국가 일률적 강제	강력한 국가 일률적 강제
적용 대상	만 16세 미만 청소년	만 18세 미만 청소년
적용 범위	모바일게임, 콘솔게임을 제외한 PC게임에 한정	인터넷 게임
시행 일자	2011.11.20.	국무원 통과 후

4) available: http://www.cac.gov.cn/2016-09/30/c_1119656665.htm.

없거나 온라인 접속이 필요없는 콘솔 게임기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한 모바일 게임은 2019년 5월까지 적용을 유예한다.⁵⁾

3. 중국 인터넷게임 섯다운제 의미와 전망

중국 정부는 게임을 ‘중점육성 문화산업’으로 지정하고 게임 규제완화 노력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조치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일일 게임 누적 접속시간이 3-5시간일 경우 게임머니 및 경험치 획득률이 50%로 감소되고 5시간이 초과되면 0으로 감소되는 ‘인터넷게임 중독방지 시스템(网络游戏防沉迷系统)’을 2007년 시행한 바 있다.⁶⁾

또한, 모바일게임의 사전허가증(版号) 발급 의무화⁷⁾ 등 중국의 사전 검열이 더욱 강화되고 중국의 사드 영향으로 3월 중국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中国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이 한국산 게임의 신규 사전허가증을 단 1건도 발급하지 않아⁸⁾ 한국 게임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중국의 게임 섯다운제와 더불어 이러한 추세는 한국산 모바일게임의 중국 진출과 서비스 운영에도 상당기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⁹⁾ KISO JOURNAL

5) available: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81182&cid=40942&categoryId=32854>.

6) available: <http://tech.sina.com.cn/i/2007-04-26/10121484715.shtml>.

7) available: <http://www.sappprft.gov.cn/sappprft/contents/6588/298011.shtml>.

8) 한국경제(2017.3.16), 中, 3월 한국게임 신규 판호 발급 ‘0건’

available: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3163703v>, 중국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中国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

available: <http://www.gapp.gov.cn/govservice/1981/313522.shtml>.

9) 이뉴스투데이(2017.1.10), 중국 인터넷-게임 규제 장벽 높여...게임 섯다운제도 도입.

available: <http://www.ewe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5510>.

인터넷 포털의 투명성과 이용자 신뢰 - 가짜 뉴스를 중심으로

강장묵 /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교수

<Keyword>

포털, 투명성, 인터넷 신뢰, 자정시스템, 선순환, 가짜뉴스, 댓글, 인터넷 제도

병인양요로 어지럽던 구한말, 사대부 대감의 걱정은 성리학을 지켜내고 외세를 배척하는 것이었다. 초연결 시대, 우리에게 위정척사사상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100년 전, 성리학이라는 형이상학을 버리고 신문물을 받아 들였다면 어땠을까. 포털을 통한 표현의 자유와 투명성 그리고 신뢰 회복에는 성리학 못지않은 단단한 사회 체제가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신문물의 특징을 간파하고 시대의 나침판을 세워야 할 때에 19세기적 사고를 유물처럼 꼭 껴안은 법학자, 행정학자, 관료는 없는지. 아니, 19세기 그물로 포획된 21세기 기술은 미래에도 존재할까.

‘인터넷 포털의 투명성과 이용자 신뢰’라는 거대주제를 받은 필자로서는 답론이 주는 무게감에 먹먹해 올 뿐, 뽀족한 대안과 정책이 떠오르지 않는다. 하와이에서 택시 운전을 해본 경험이 있는 필자에게 포털은 손님을 기다리는 지난한 시간을 견디게 해주는 소일거리다.

본인은 포털에 배치된 뉴스로 사안의 경중을 가늠해보고, 실시간 인기 검색어는 공중의 관심을 보여준다고 지레짐작한다. 이 소박한 짐작은 포털이 가짜 뉴스, 가짜 인기 검색어, 댓글 조작, 편향적 이념의 통로가 된다는 의심을 불러왔다. 이는 소박한 의심일 뿐, 그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우리나라 몇몇 포털은 뉴스,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등을 한 몸통에서 서비스 하면서 정보가 여기저기로 흩어져 정화되어 돌아오는 것 같지만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 이기적 개인의 활동에 공중의 이익이 손상 받지 않는 최적의 알고리즘 개발에 굶픈 것도 사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개선된 알고리즘에 의한 경쟁이 아니라, 콘텐츠의 포획과 집중에 있었기 때문이다.

인터넷 숲을 조망한다면, 정보는 쉽게 잘 이해(소통: good understanding)되도록 선순환 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ㅇ빠’에서

‘○부대’에 이르기까지 포털에 대한 의혹과 불편한 심기는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포털은 뉴스 즉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고 담는 그릇인데 ‘그릇에 물이 고여 이끼가 끼고 더러는 상한 것 같다’는 주장이 있다. 콘텐츠는 인터넷 상수원인데, 국가가 나서서 표백제라도 뿌려 수질을 정확하겠다는 규제는 과연 바람직할까. 물을 담는 그릇인 포털이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운동주 시인의 자화상처럼 투명해 보인다. 뽀족하고 긴 주둥이에 담으면 속을 알 수 없어, 향기로 내용을 가늠하고자 코를 실룩 거릴 수도 있다. 포털이 좌와 우로 편향된 우리 정치사에 ‘어느 편의 손을 들어준 것 같다’는 의혹이 가짜 뉴스 논쟁으로까지 치달았지만, 지금까지 규제가 부족하여 2000년대 댓글부터 2010년대 가짜 뉴스까지 이어진 것일까.

규제주의자가 기술이 내포한 선한 가치와 오용의 문제를 잘 이해하고 사회적 합의를 규율로서 정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규제주의자는 표층적인 현상인 악플, 실시간급상승검색어에 대한 의혹, 댓글 조작 사건 등에 놀란 ‘권력자의 언사에 놀려, 사고 면피용 정책을 쏟아내기에 급급했다.’ 기업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국회로 불려나가 진상을 설명하거나 급조된 세무조사 등을 받아야 했다. 어느 것 하나 바람직하다 볼 것이 없는데, 대한민국에 다음 한메일이 시작되고 네이버 검색엔진이 자리매김한 이후, 매년 겪는 수해처럼 반복되는 디지털 재앙이다.

비단, 이런 신뢰에 기초한 문제는 ICT 강국인 미국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오바마 전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후보로 나온 2008년 캠페인

동안에는 ‘아랍의 첩자’라는 유언비어가 나돌았고 작년 미국 대통령 선거 역시 ‘가짜 뉴스’로 홍역을 앓았다. 그도 그럴 것이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정보 간의 상호작용이 늘어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유유상종 또는 초기 알고리즘 안에서 역기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지난 45번째 미국 대통령 선거는 페이스북의 가짜뉴스로 공방이 있었다. 급기야 페이스북은 가짜뉴스를 선별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 알고리즘이 잘 작동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가짜뉴스를 선별한다고 해서 페이스북이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더러 가짜나 황색저널리즘 또는 자극적이고 낚시성 광고나 글로 쏠쏠한 재미를 보는 면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에 가짜 뉴스가 등장하고 사회에 반향을 일으킨 것은 그 서비스가 갖는 자정 효과나 초기 개발당시의 검색 알고리즘이 그 기능을 잃어간다는 반증이다. 페이스북은 우리나라의 싸이월드와 유사한 관계지향형 서비스이다. 싸이월드는 1촌이라는 관계로 지인의 소식(뉴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검색방식을 사용했다면 페이스북은 공유, 외부 유입, 댓글 등 상호작용한 지인의 뉴스를 선별해서 보여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서구라 할지라도 명함을 주고받으며 직책과 직급, 지연과 학연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관계에 식상하고 고루해질 때, 우리는 진짜 관계를 고민하게 된다. 페이스북은 그 문화적 토대에서 관계란 와서 많이 보고 공감하고 반응한 이들이 ‘진짜 관계’라는 새로운 가치를 알고리즘으로 구현한 것이다.

페이스북의 성공은 당연한 일이었다. 우린 관계에 목말라왔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이 관계 맺기와 확장 방식이 수년이 흐르면서 그 고

유의 패턴이 형성되고 결국은 경로의존적인 형태의 소통 방식이 자리를 잡게 된다. 그래서 페이스북 역시 유유상종이고 폐북질을 할 ‘잉여의 인간’에게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 표피적 사건이 가짜 뉴스였을 뿐인 것이다. 그런데 이 원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걸만 보고 규제를 한다면 인터넷은 발전할 수 있을까.

인터넷의 신뢰가 전체 생태계를 위협하지만, 그럴 때 일수록 미국내 자정은 규제에 있지 않고 발칙하고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생태계 유지에 있었다. 미국의 사례는 우리나라 포털의 자정작용과 신뢰 회복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필자는 페이스북이 유일신하지 못한다면, 남다른 관계 맺기 예를 들어 사물의 기억과 관계를 맺어 나가는 IoT 매개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상호 한계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포털은 대한민국 고유의 자생종들이 만발하면서 그 화려함을 뽐낼 수 없는 생태 환경이다. 30년 전부터 인공지능이 출현해 10년 전부터는 상당한 연구가 진전되고 있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페이스북이 나오면 포털의 유사한 서비스가 나오고 트위터가 나오면 역시 포털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한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모바일 포털에서 우버와 유사한 서비스를 내놓았는데 ‘과연 우버, 에어비앤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초기 등장자 이미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은 포털이었나’라는 점이다.

물론 네이버의 라인 등 몇몇 서비스가 선전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표 선수 겪인 포털 몇몇이 유리한 고지

에서 신규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것은 다음의 문제가 있다. 바로 새로운 서비스 즉 메신저든, 지도든, 뉴스든, 블로그든, 메일이든 자사의 기존 서비스와 결합하여 신규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신규서비스로 유입되거나 나가는 정보는 경쟁 서비스와 배타적으로 닫힌 구조여야 했다. 포털은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할수록 더욱 크고 넓은 닫힌 구조들의 결합구조를 이루면서 오염되기 쉬운 구조가 된다. 이는 필연적인 현상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은 규제가 아니라, 정보 선순환을 위해 포털의 담을 허무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정책 입안자나 관료가 이상의 문제 인식을 갖지 못하고 댓글 사건, 가짜뉴스, 실급검 어뷰스 사건 등이 나타날 때마다 규제 포털을 유폐했다. 무지가 부른 악화이다.

인터넷의 투명성이 저해된 이유는 무지한 정부 관료들의 묵인보다는 포털의 실시간 검색, 뉴스 배치와 순위 등의 자동화 알고리즘에서 어느 정도 국가 정책의 향방에 거스르기 싫은 몸짓이 익숙해져버린 것은 아닐까. 무지한 관료는 언제든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정책을 권력자의 입맛에 맞추어 제시하기 때문이다. 포털도 내상이 큰 것이다.

필자는 얼마 전에 가짜뉴스 판별 알고리즘과 관련한 아이디어가 번득 떠올라 선잠자듯 만든 적이 있다. 그 판별이란 갑작스럽게 조회수가 올라간다거나 올라간 조회수라고 할지라도 특정인에 의한 수천번의 클릭인지, 수천명에 의한 단 한번의 클릭인지 또는 비중이 비슷하거나 성향이 유사한 언론사 간에 주고받는 기사 유사율이 높은 빈도인지, 특정인이 특정 장소에서 공유와 퍼나름을 즐겨하였는지, 제3파티 즉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 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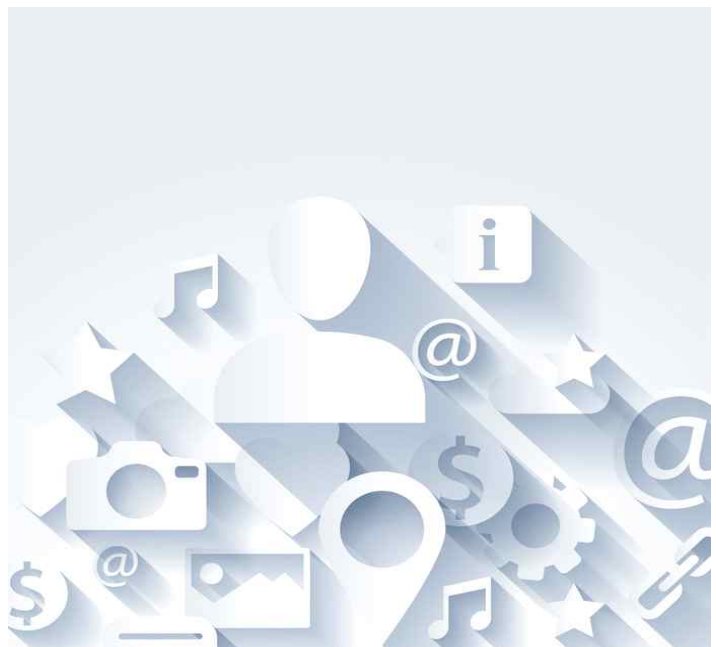
은지 적은지 등을 보고 마지막에는 이용자가 ‘가짜/진짜’의 5점 척도를 주는 방식 등을 더해 뉴스의 진위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은, 과연 이와 같은 작용이 이루어지면 가짜 뉴스가 판별되는 것일까라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포털의 투명성을 두고 의구심을 품는 고질병은 면역력을 높이고 체력을 기르라는 원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단순히 표피적인 규제를 하나 더 늘려 관료들의 일감을 늘려 주기보다, ‘인터넷 신뢰’라는 이 가치 지향적이고 정치적이며 철학적인 담론을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구현해낼 젊은이가 튀어 오를 수 있는 스프링을 발받침대로 넣어주는 것이다.

가짜 뉴스, 댓글부대, 낚시성 콘텐츠 등 신뢰를 잃게 하는 사건 속에는 덕지덕지하게 덧입은 규제 정책만이 남아있다.

이처럼 어지럽게 덧붙이고 겹쳐진 ICT 정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포털은 증강 현실, 인공지능, 자율주행, 드론 등 다양한 정보재를 활용한 신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내놓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들의 아이디어로 다양한 콘텐츠가 이리저리 충돌하며 유성처럼 선회할 때 ‘인터넷 신뢰’에 대한 염려는 감기 증상으로 끝날 수 있다. KISO JOURNAL



영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협회(ISPA UK)¹⁾

박옥범 /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 박사과정

〈Keyword〉

영국, ISPA, 인터넷 자율 규제

영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협회(The Internet Services Providers' Association, 이하 ISPA UK)는 1995년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이익 (혹은 동업자) 단체다. ISPA UK는 영국의 인터넷 산업 전반에 걸쳐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들이 원하는 사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한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영국 경제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자 영국의 온라인 환경 개선 노력에도 동참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특히, 인터넷 자율규제와 관련한 ISPA UK의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직 구성

ISPA UK는 영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인 BT, Virgin Media, TalkTalk, Sky 등을 포함해서 200개가 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 및 관련 기관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이사회 (Council), 분과위원회 (Subgroup), 그리고 사무국 (Secretariat) 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 이사회(Council)

이사회는 협회의 최고 심의/의결 조직이며, 최대 10명의 회원 관련자들로 구성되어있다. 이사회는 협회의 주요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사안별로 협회의 입장을 정리하며, 협회의 핵심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 하는 곳이다. 2017년 4월 현재, 총 10명의 회원 대표자들이 이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대표자를 둔 회원 단체는 Sky, Gigaclear, Metronet (UK), Virgin Media, BT, Bridge Fibre, ASK4, LINX, Entanet, Avonline Broadband 이다.

1) 이 글은 대부분 ISPA UK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다. Available: <https://www.ispa.org.uk/>

나. 분과위원회(Subgroup)

분과위원회는 협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회원들간에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협회가 해당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함께 논의하는 공간(forum)이다. ISPA UK의 회원들은 이곳에서 전체 협회 차원의 문제는 물론 개별 회원과 관련된 특정 현안들도 논의할 수 있으며, 협회는 회원들이 분과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사안별로 ‘브로드밴드(Broadband)’, ‘콘텐츠 관련 법적 문제(Content Liability)’, ‘인터넷 윤리(Internet Safety)’, ‘법적규제(Law Enforcement)’ 등의 분과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다. 사무국(Secretariat)

사무국은 주로 이사회와 분과위원회 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협회의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조직이다. ISPA UK에 따르면, 사무국의 행정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Political Intelligence라는 인터넷 관련 행정 서비스 전문 업체에서 관할하고 있다.

2. 인터넷 자율규제 관련 활동

ISPA UK는 특정 사안에 대한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인터넷 산업의 경쟁력 제고, 혁신, 보다 나은 온라인 환경의 제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동참하고 있다. 그 중 인터넷 자율규제와 관련한 ISPA UK의 활동은 영

국 인터넷 감시재단 (Internet Watch Foundation, 이하 IWF) 지원과 영국 공공부문 (정부, 의회 및 관련 공공기관)과의 협업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뉘어서 살펴볼 수 있다.

가. 영국 인터넷 감시재단(IWF) 지원

ISPA UK는 영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자율규제 기구인 IWF²⁾의 설립에 기여함은 물론, 이후 재단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영국 내 인터넷 자율규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우선, ISPA UK는 IWF의 설립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1996년 영국 경찰은 ISPA UK에 아동 관련 불법 온라인 콘텐츠를 규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영국 경찰, 관련 정부부처, 인터넷 사업자들간에 온라인 콘텐츠의 등급(rating), 신고(reporting), 책임 (responsibility)과 관련한 내용의 합의서 (R3 Safety Net Agreement)가 체결된다. IWF는 바로 이 합의서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설립된 재단이다.³⁾ 자연스럽게 ISPA UK는 IWF의 설립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지금까지 20년 이상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현재 ISPA UK는 IWF의 상임 회원(permanent membership)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기금위원회에도 참석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IWF의 활동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ISPA UK는 회원 규약 (code of practice)을 통해 회원들이 IWF의 활동에 협조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이 IWF의 인터넷 자율규제 활동에 협조하고 동참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 점은

2)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2015). 영국 인터넷 감시재단(IWF, Internet Watch Foundation). 『KISO저널』, 18호, 44~47.
3) IWF 홈페이지. Available: <https://www.iwf.org.uk/what-we-do/why-we-exist/our-history>

아래의 ISPA UK 회원 규약 ('5. Internet Watch Foundation')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협회 회원은 자동으로 IWF의 회원이 되진 않지만, 별도로 IWF에 가입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우리 협회는 IWF의 주요 활동 (불법 사이트/게시물의 삭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회원들은 IWF와 관련된 다음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 우선, 모든 회원은 IWF의 통보를 접수할 수 있는 별도의 연락처를 협회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IWF가 협회 회원이 관할하고 있는 특정 사이트가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알려오면, 통보를 받은 해당 협회 회원은 즉시 관련 사이트 및 게시물을 삭제해야 한다. 만일, 해당 사이트나 게시물의 삭제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통보 받은 회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그 사유를 IWF에 전달해야 하며, IWF 혹은 관련 사법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삭제한 내용의 복사본을 상당기간 보관해야 한다. 끝으로, 협회 회원들은 IWF의 제반 공지나 권고 사항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나. 영국 공공부문(정부, 의회 및 관련 공공기업)과의 협업

ISPA UK는 다양한 공공 부문과의 협업을 통해서도 영국 내 인터넷 자율규제 활동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ISPA UK는 '인터넷 윤리 분과위원회'(Internet Safety Subgroup)를 통해서 온라인 윤리 확립 및 감시 활동을 위해 정부 부처, 사법 당국 등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고 있다.⁴⁾ 구체적으로, 협회는 아이들에게 좀 더 안전한 인터넷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 설치된 영국 내무성 (Home Office)의 인터넷 아동보호 전담반 (Task Force on Child Protection on the Internet), 국가범죄수사국 (National Crime Agency) 산하의 아동 착취 및 온라인 감시 센터 (Child Exploitation & Online Protection Centre)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를 통해 ISPA UK는 공공 부문의 인터넷 규제 활동이 기존 인터넷 자율규제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 역할을 했다.

또한 ISPA UK는, 영국 정부의 인터넷 관련 행정 조치와 의회의 온라인 관련 입법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거나 관련 토론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ISPA UK가 보다 나은 온라인 환경을 위한 공공부문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서 끊임 없이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써, 결과적으로 영국의 인터넷 자율규제 활동을 위한 기존의 사회적 토양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SPA UK는 정부가 주도하고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경제법안 (Digital Economy Bill)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⁵⁾ 영국 정부가 2009년 9월

4) 동 분과위원회에서는 IWF 및 민간 온라인 감시센터 (Get Safe Online)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다. Available: <https://www.ispa.org.uk/policy/regulatory-issues/>

5) BBC News (2012.4.26). Digital Economy Act's anti-piracy measures are delayed. Available: <http://www.bbc.co.uk/news/technology-17853518>

에 제안한 디지털 경제법안은 법원의 판단 없이도 인터넷 사용자의 접속 차단을 정부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에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법안은 영국 하원 (The House of Commons), 상원 (The House of Lords)의 위원회 심의 (Report stage)를 통과해서 2017년 4월 법률로 공포되었다.⁶⁾ 이 과정에서 ISPA UK는 디지털 경제법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ISPA UK는 성명을 통해 “동 법안은 이해관계에 있는 정당에 의해 충분한 고려 없이 성급하게 작성된 법안에 불과하고, 저작권자들에게 저작권 침해로 의심되는 사이트에 대한 폐쇄를 명하는 법원의 이행명령을 허락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행위”라고 비판하며 법안 시행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⁷⁾ 또한 ISPA UK는 이 법이 결과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을 지나치게 강화시켜서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20년간 쌓아온 영국의 온라인 환경 개선 노력의 성과를 해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⁸⁾

3. 요약 및 시사점

ISPA UK는 IWF를 그 설립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해왔으며, 협회 회원들 (인터넷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기업/단체들)이 IWF의 인터넷 자율규제 활동에 반드시 협조하고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독려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영국의 인터넷 자율규제 활동에

기여해오고 있다. 특히, ISPA UK의 회원 규약이 단순히 권고 사항이 아니라 회원자격을 유지하는 조건임을 감안할 때, ISPA UK의 IWF 인터넷 자율규제 활동 지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또한, ISPA UK는 불법 인터넷 콘텐츠를 감시하는 공공 부문의 활동에도 참여함은 물론, 전체 인터넷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정책이나 의회 법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으로써, 영국 내 인터넷 자율규제 활동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ISPA UK의 활동을 살펴본 후,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과 자율규제 기구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이 관계가 전반적인 인터넷 자율규제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ISPA UK가 기본적으로 이익 집단의 성격을 띄고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지만, 협회는 회원들에게 IWF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 자율규제 활동에 동참하고 협조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전체 인터넷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결국 개별 회원들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는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또한 인터넷 자율규제 기구들은 이러한 공감대를 협업의 기초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ISPA UK가 IWF와의 협업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

6) 영국 의회 홈페이지. Available: <http://services.parliament.uk/bills/2016-17/digitaleconomy.html>

7)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 (2010). Copyright Issue Report 제5호 [유럽] 영국, 디지털경제법안 (Digital Economy Bill) 상원 위원회 심의 통과, ISPA UK 등 찬반 논란 가속화. Available: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download.do?brdctno=8540&brdctfileno=4946>

8) ISPA UK 보도자료 (2016). The Digital Economy Bill should not harm the Digital Economy. Available: <https://www.ispa.org.uk/digital-economy-bill-not-harm-digital-economy/>

과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과 자율규제 기구들의 협업 과정에도 의미있는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다. KISO JOURNAL

〈그림〉 ISPA UK의 대 정부/의회 정책 제언 내용

The screenshot shows the ISPAUK website's 'Policy responses' page. The header includes the ISPAUK logo and navigation links like 'About Us', 'Join', 'Members', etc. The main content area lists various consultations and inquiries that ISPA has responded to, such as 'Response to the Ofcom ADR Call for input ISPA Response' and 'Response to Extending Local Full Fibre Broadband Networks ISPA Response'. It also lists responses from previous years and mentions that ISPA has been called as a witness to certain inquiries.

(출처 : ISPA UK 홈페이지)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양현서 / (주)카카오 대외협력실 부장 · KISO저널 편집위원

〈Keyword〉

문재인 정부, 네거티브 규제, 규제 개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50일이 지났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국정교과서 폐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석탄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 등 여러 사회적 문제에서 주요한 결정을 내려왔다. 또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탈권위·친서민 행보를 보여주며 국정 지지율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ICT 산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기에 우리의 미래 먹거리인 ICT 산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구체적 구상과 계획은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산업계에서는 이미 “이 정부에서 ICT 산업은 뒷전인 것 같다”는 불멘소리가 나온다.

과학기술 전문가인 문미옥 의원이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에 임명됐지만, 전 정부의 미래 전략수석에 비해 ICT 영역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ICT 분야가 포함된 경제 2분과 전문위원 중 정작 ICT 전문가가 드물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모두가 입을 모아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말하지만,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정부의 비전과 실천 과제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셈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ICT 활용도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지만, 제도적 측면에서는 중국에 뒤진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가 166개국의 ICT에 대한 접근성, 이용도, 활용력 등을 종합 평가한 ICT 발전지수 순위(ICT Development Index)에서 우리나라는 ICT 활용 역량 부분에서는 세계 2위에 올랐다. 그러나 인터넷 산업발전을 위한 육성정책 부분에서는 30위(중국은 33위)를 기록했으며, “기업에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지원하도록 규제가 수립되었는가”에 대한 설문에서는 조사 대상 60개국 중 46위였다. 중국은 29위, 일본은 34위였다.

○ 규제 개선 구조 전환 시급

국내 ICT 산업이 제2의 부흥기를 맞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의 규제 체계 전환이 시급하다.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을 자세하게 나열한 현재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제에서 벗어나 ‘해서는 안될 것’을 규정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규제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할 수 있는 것’을 나열한 현 규제 체계로 인해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혁신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제한된 영역에서만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는 없는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국내 서비스는 점점 더 내수화되고 있다.

중복된 규제도 시급하게 손을 봐야 한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안에 걸쳐 중복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위치정보법이 독립적으로 제정된 사례는 우리나라가 최초다. 이렇게 동일한 영역이 여러 법안에 걸쳐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제가 돼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신선한 서비스 모델을 만드는 일은 낙타가 바늘구멍 찾기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대한 규제도 풀어가야 할 숙제다. 국내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한 법률에서는 옵트인(Opt-in) 방식의 동의를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기업들은 옵트아웃(Opt-out) 방식으로 동의를 받는다. 국내 기업들의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옵트인 방식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정보의 처리 자체가 불편해지는 어려움을 종종 겪는다. 데이터 활용이 중요해짐에 따라 옵트아웃

방식의 필요성이 고개를 들고 있긴 하지만 우리에게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데이터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규제를 손봐 기술 발전의 선순환을 이끌어 내야 한다. 미국, 중국 등이 이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규제에 묶여 새로운 도전의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다.

심화되고 있는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역시 새 정부가 나서야 한다.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연간 수십~수백억원의 망 비용을 통신사에 지불하지만, 유튜브는 국내 망을 무료로 사용한다. 이렇다 보니 국내 사업자들은 망 비용이 무서워 이용자들에게 고화질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지만, 유튜브는 거리낌없이 고화질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영상 분야에서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 하루 이틀 제기된 이슈가 아니지만, 우리 정부는 이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계속 국내 사업자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

○ 새 정부가 갈 길 제시해야

새 정부의 정책 방향 제시가 늦어지면서 국회의 엇박자도 심각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서는 경쟁상황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터넷 산업은 동태적이고 비정형적 시장이

므로 관련 시장 확정은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적인 잣대로 시장을 확정하고 산업을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혁신과 성장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산업을 규정해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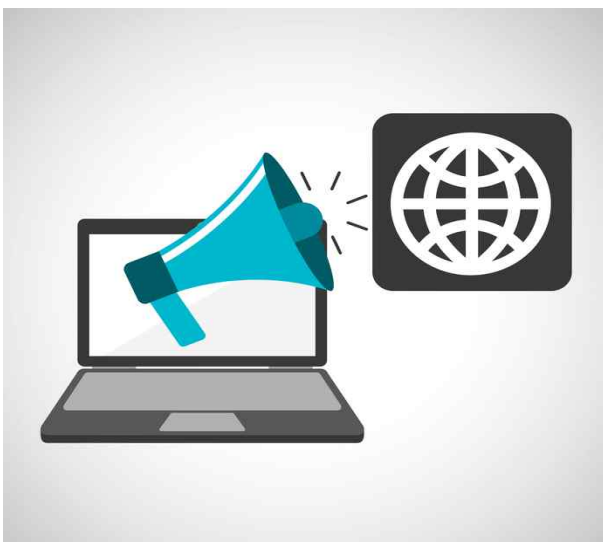
2008년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GAFA)의 시가총액은 208조원, 한국의 코스피(KOSPI) 시가총액은 855조원이었다. 그리고 9년 후인 2017년 현재 GAFA의 시가총액은 2594조, 한국의 KOSPI 시가총액은 1534조에 이른다. 9년 사이 미국 기업 4곳의 시가총액이 열배가 넘게 불어나는 동안, 한국의 경제 규모는 채 두 배도 늘어나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인터넷 산업에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규제들이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우리만의 규제’는 결국 이용자의 불편을 가중시켜 국내 서비스를 도외시하게 만든다. 또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을 발생시켜 국내 인터넷 기업, 특히 스타트업

등 중소 인터넷 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Ray Kurzweil)은 지난 20세기 100년의 발전은 21세기의 발전 속도로는 20년이면 다 해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얘기한다. 수십년 후면 우리는 해마다 ‘20세기 전체 발전’의 몇 배에 달하는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는 얘기다. 커즈와일은 이러한 인류의 가속 발전을 ‘수확 가속의 법칙(Law of Accelerating Returns)’라고 명명했다.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활기를 잃어버린 한국 경제에 숨통을 트이는 일 또한 미뤄져서는 안된다. 인터넷 산업을 기반으로 한 ‘수확 가속의 법칙’에서 한국만 제자리 걸음을 해야 되겠는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ICT 산업 분야에 대한 비전 제시와 규제 개선 노력이 하루 빨리 가시화되길 바란다. KISO JOURNAL



미래의 정체, 정말 보여준다.

김연지 / (주)카카오 인프라실

〈Keyword〉
 미래, 케빈 켈리, 방향성, inevitable

제 목	인에비터블 미래의 정체 (12가지 법칙으로 다가오는 피할 수 없는 것들)		
저 자	케빈 켈리 저	역 자	이한음
출판사	청림출판	출간일	2017년 1월 17일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 때 보다 강한 시대다. 그 중 이 책의 저자, 케빈 켈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은 독특하면서도 설득력이 있다.

- 케빈 켈리는 기술을 중심으로 다루는 미디어 WIRED(1993년 창간) 공동 창업자겸 편집장이었고,
- 뉴욕타임즈, 이코노미스트, 사이언스, 타임,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기고 활동을 하며, '위대한 사상가'로 불린다.
- 2025년까지 지구 상의 모든 생명체를 분류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재단 (<https://www.all-species.org>)을 만들었고,
- 만년 등, 더 큰 단위의 미래를 고민하는 롱나우재단(<http://longnow.org>)의 열혈 지지자다.

- 십수 년 전에는 세계 일류 헤드 헌팅 회사의 CEO로 '올해의 헤드헌터'라고도 불렀고,
- 젊은 시절에는 대학을 그만두고 오지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사진〉 케빈 켈리

그의 아이디어는, 인류 역사에서 이미 30년 이상 지속되어온 편향적인 특성을 찾아 그 방향으로 미래를 예측해 보자는 것이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피할 수 없는 방향성을 찾아 보자는 아이디어 자체도 신선하지만, 그렇게 해서 뽑아낸 키워드들은 미래를 준비해야 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핵심들을 명쾌하게 정리해주는 가이드로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1. 새로운 무언가로, 되어가다 **Becoming**
2.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인지화하다 **Cognifying**
3. 고정된 것에서 유동적인 것으로, 흐르다 **Flowing**
4. 현재는 읽지만 미래는, 화면을 보다 **Screening**
5. 소유하지 않고, 접근하다 **Accessing**
6. 나만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 공유하다 **Sharing**
7. 나를 나답게 만들기 위해, 걸러내다 **Filtering**
8. 섞일 수 없는 것을, 뒤섞다 **Remixing**
9. 사람들에게 하듯 사물과, 상호작용하다 **Interacting**
10. 측정하고 기록해 흐름을, 추적하다 **Tracking**
11. 가치를 만들어 낼 무언가를, 질문하다 **Questioning**
12. 오늘과 다른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다 **Beginning**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AI에 대해 저자는 '외계인을 만난 것과 비슷하다'고 표현한다. 지금까지의 혁신은 빨래가 세탁기로, 빗자루질이 청소기로 변하는, 한마디로 '전기화'되는 혁신이었다면, 앞으로의 혁신은 '인지화'되는 혁신이다. 이제 세탁기에 AI가, 청소기에 AI가 나아가 부동산, 간호, 건설, 유통 등 세상 모든 것에 AI가 더해질 텐데, 바로 그 AI가 외계인과 마찬가지로 애기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세상을 인간의 인지체계로 바라봤다. 예를 들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사랑하고 인정받으며 행복을 느낀다. 그런데, 홀로 생활하는 호랑이의 사회성은 어떨까. 개구리는 무엇으로 행복을 느끼는 인지체계를 가졌을까? 행복이라는 감정이 있기는 한 것일까. 그런 면에서 외계인도, AI 비슷한 존재다. 우리는 우리와 다른 종의 인지체계를 상상하기가 어렵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우리는 여러 인간들의 생각을 모아 풀어왔다. 하지만 앞으로의 문제는 여러 종의 인지체계를 모아 풀게 될 수도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그 이종이 도출해 낸 풀이법을 믿기 위한 도구, 이해하기 위한 도구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그 시대가 오면 과학 하는 방법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고, AI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협업하느냐가 성공의 핵심 조건이 될 것이다. 정확하고 '값싼' 아날로그 사본들을 가능케 한 산업 시대를 지나, 이제 정확하고 '무료'인 디지털 사본들의 시대인 정보 시대다. 기계와 사본의 시대에서 인간이 설 자리에 대한 논의는 이 시대 핵심 화두다. 다가오는 미래에 우리는 어떤 가치에 의미를 두고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자는 시원하게 정리해준다. 바로 이런 가치들이다.

1. 영화의 개봉작, 출판물의 초판과 같은, 즉시성(immediacy)
2. 내 DNA에 맞춘 약물이나 내 취향에 맞게 편집된 영화과 같은, 개인화(personalization)
3. 상품은 점차 무료가 되어가지만 그 사용 설명서가 고부가가치가 되는, 해석(interpretation)
4. 버그나 멀웨어에 대한 걱정을 덜기 위한 비용인, 진품성(authenticity)
5. 클라우드 시스템처럼 소유하고 유지할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접근성(accessibility)
6. 저자와의 대화나 직접 가는 콘서트 등의, 체현(embodiment)
7. 적절한 방법으로 직접 창작자에게 전달 되는, 후원(patronage)
8. 아마존이나 넷플릭스에 비용을 지불하는 이유는 상품이 아니라기보다는 추천이나 평가, 바로 발견성(discoverability)

그 외에도, 소유자가 없는 망(네트워크, 클라우드 등)이 등장하게 되면 고민해야 할 많은 질문들, 책의 사회화(위키피디아는 최초로 망을 이룬 책이다)가 앞으로 가져올 '정보' 영역에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 '되감기' 즉 검색/편집이 가능해지면서 음악과 영상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 주목받지 못했던 온갖 구석의 비베스트셀러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시대, 결국 우리의 뇌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는 시대에 대한 이슈 제기까지, 흥미로우면서 철학적이기도 한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한 챕터를 할애한 'Questioning' 에서

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야 할 질문들, 그리고 답을 찾아야 할 질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인간의 차별점은 질문하는 본능이고, 좋은 질문은 인간의 존재를 묻는 것이다.

- 좋은 질문은 정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 좋은 질문은 즉시 답할 수 없는 것이다.
- 좋은 질문은 기존 답에 도전한다.
- 좋은 질문은 일단 들으면 답을 알고 싶어 못 견디지만, 듣기 전까지는 아예 생각도 못한 것이다.
- 좋은 질문은 새로운 사고 영역을 낳는다.
- 좋은 질문은 자신의 답들을 재구성한다.
- 좋은 질문은 과학, 기술, 예술, 정치, 경제에 혁신의 씨앗이 된다.
- 좋은 질문은 탐침. 만약-이라면 시나리오다.
- 좋은 질문은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의 가장자리에 걸쳐 있는, 어리석지도 명백하지도 않은 것이다.
- 좋은 질문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 좋은 질문은 교양 있음을 보여주는 표지가 될 것이다.
- 좋은 질문은 다른 많은 좋은 질문을 낳을 것이다.
- 좋은 질문은 기계가 마지막으로 배우는 것이 될 수 있다.
- 좋은 질문은 인간의 존재 의미를 묻는 것이다.

중간 중간 마치 영화를 보듯이 머리 속에 그려지는 미래 일상생활에 대한 묘사는 책의 백미 중 하나인데, 저자는 그렇게, 미래를 아름답고 흥미진진하게 바라본다. 게다가 지금이 아직 그 무엇도 시작도 되지 않은 출발점,

더 많은 기회가 있고, 장벽은 낮고, 조건도, 수익률도 좋은, 올라타면 되는 시점으로 설명하며, 언제부터인가 주눅 들어 있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어찌 보면 저자가 너무 아름답게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음 한 편에 의심도 솟아오르지만, 미래에 대해 고민해온 사상가로서 변화무쌍한 시대 흐름 속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중들에게 책을 통해 위로를 건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부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정치 / 정책 / 인식의 수준도 균형을 맞추어 성장해서, 그가 그리는 바람직한 상상의 방향으로 미래의 정체가 드러나기를 기대해 본다. KISO JOURNAL



「포털의 검색어 정책 방향성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17년 6월 7일 한국프레스센터(19층)에서 ‘포털의 검색어 정책 방향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KISO포럼 좌장을 맡고 있는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발제자로 참석한 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가 ‘KISO 자동완성검색어 및 연관 검색어 정책과 쟁점’을 소개하고,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이 ‘인터넷 검색중립성 논의 현황과 포털 검색어 정책의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가연 변호사(오픈넷), 윤여진 상임이사(언론인권센터), 황성기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용석 교수(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가나다순)가 향후 인터넷 포털의 검색어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KISO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포털의 검색어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해 자율규제 차원에서의 노력을 기울이고, 검색어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구제뿐만 아니라,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 인터넷 공간의 중요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KISO JOURNAL

[\[자료집 및 주요 토론내용 확인하기\]](#)

KISO, 인터넷 개인 방송인을 위한 안내 자료 제작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장 임지훈, 이하 KISO)는 지난 2017년 4월 6일 인터넷 개인방송인들을 위한 안내 자료를 제작하였다.

개인방송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음란방송 문제점 등 사회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KISO는 인터넷 개인방송인 또는 예비 개인방송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보다 쉽게 안내하고자 자료를 제작하게 되었다.

‘도박/사행/범죄조장’, ‘혐오/잔혹/차별’, ‘선정/음란’, ‘저작권 침해’ 등 총 4개 섹션의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된 안내 자료에서는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수록하여 이해를 돕고자 했으며, 개인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KISO는 앞으로도 인터넷 개인방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인터넷 사업자와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자율규제 환경을 구축해 나아가는데 힘을 계획이다. KISO JOURNAL

[\[인터넷 개인방송인을 위한 안내자료 확인하기 >\]](#)

<KISO저널 제27호>

발행일 2017.6.30.

발행인 임지훈

발행처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표지디자인 신원디마

0615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7층

(삼성동 143-37, 현대타워)

대표전화 02.6959.5206

대표메일 kiso@kiso.or.kr

홈페이지 www.kiso.or.kr

저널 홈페이지 journal.kiso.or.kr

◆ KISO저널에 게시 및 수록된 글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KISO저널 27호의 본문은 '한겨레결체'로 작성되었습니다.

◆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허가 없이 본 내용의 무단전제나 복제를 금지합니다. 내용에 관한 문의가 있으시면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563.4955)

<편집위원>

위원장/황용석 교수(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권현영 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유향 팀장(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김효섭 부장(네이버 경영지원실)

서승원 매니저(SK커뮤니케이션즈 사업협력실)

양현서 부장(카카오 대외협력실)

윤혜선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원태 박사(KISDI ICT전략연구실)

편집간사/고아라 책임연구원(KISO기획협력팀)



ISSN 2287-8866(Online)